



보건복지부	보	도 참	고	자 료
배 포 일	2020. 7. 3. / (총 12매)			
중앙사고수습본부	팀 장	정 혜 은		044-202-3575
전략기획팀	담 당 자	김 우 람		044-202-3804
중대본 총리실 상황실	과 장	김 성 훈		044-200-2293
기획총괄팀	담 당 자	이 승 훈		044-200-2295
광주광역시	과 장	김 성 학		062-613-4660
재난대응과	담 당 자	홍 기 택		062-613-4680
광주광역시	과 장	김 광 은	전 화	062-613-3310
건강정책과	담 당 자	배 강 숙		062-613-3360
중앙사고수습본부	팀 장	송 준 헌		044-202-3810
방역총괄팀	담 당 자	김 세 은		044-202-3836
중앙사고수습본부	팀 장	양 동 교		044-202-3730
해외입국관리팀	담 당 자	하 미 희		044-202-3735
중앙사고수습본부	팀 장	김 정 숙		044-202-3155
생활방역팀	담 당 자	최 신 혜		044-202-3805

# <u>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u>

- ▲광주광역시 확진자 발생현황 및 조치계획, ▲광주광역시 확진자 증가에 따른 지원방안, ▲해외유입 상황 평가 등 -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광주광역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광주광역시 확진자 발생현황 및 조치 계획, ▲광주광역시 확진자 증가에 따른 지원 방안, ▲해외유입 상황 평가 등을 논의하였다.











- □ 이 자리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광주에서의 확진자가 늘고 있는 만큼 병상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호남권 공동 대응체계를 조속히 가동하는 데에 전라남·북도가 적극 협력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 또한 경증환자의 생활치료센터 이용률을 높이면 병상 활용이 수월해질 것이라며,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등에서는 생활 치료센터의 지역별·권역별 활용현황을 점검하고 개선할 부분은 없는지 살펴달라고 주문하였다.
  - 아울러 해외유입 조치사항과 관련, 상황에 따른 유동적인 조치가 적시에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중앙방역대책본부 등 방역 당국에서는 위험도에 따라 즉각적이고 탄력적인 조치를 취해 달라고 강조하였다.
  - 한편 해외 건설현장의 우리 노동자들이 열악한 의료체계와 집단 생활 등으로 인해 방역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다각적인 지원과 방역대책을 마련해 보고해달라고 국토교통부, 외교부 등에 지시하였다.

## 1 광주광역시 확진자 발생 현황 및 조치 계획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광주광역시**(이용섭 시장)로부터 **광주광역시의** 확진자 발생 현황 및 조치 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광주광역시**에서 지난 6월 27일부터 7월 2일까지 **최근 발생한 환자**는 **총 51명**\*이다. (7.2. 23시 기준)
    - \* 광륵사 6, 금양오피스텔 14, 제주 여행 6, 광주사랑교회 14, 아가페실버센터 3, 한울요양원 4, SKJ병원 2, 노인일자리 1, 해외유입 1











- □ 지역사회 감염 확산에 따라, 광주광역시는 지난 7월 1일 광주 지역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는 조치를 하였다.
  - 이에 따라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사회서비스청년사업단, 노인 복지 유관단체(33개)뿐만 아니라, 결혼식장, 장례식장, 대규모 연회장 등에 대한 집합제한 조치를 실시하고 방역수칙 준수를 안내하였다.
  - 광주시립미술관, 비엔날레전시관, 김치박물관, 5.18기념문화센터, 공공도서관 등 **34개소**의 **공공시설의 운영을 중단**하였다.
  - 고위험시설과 관련하여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 3,365개소에 대한 집합제한 및 방문판매업체 643개소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7.2.~7.15.)를 실시하였다.
  - **노인요양시설 91개소**에 대한 **코호트 격리를 실시**(7.3.~7.16.)하고, 전체 시설의 입소자 및 종사자에 대한 검사<sup>\*</sup>를 실시할 예정이다.
    \* 91개 요양원 중 3개소 입소자 및 종사자 209명 검사 완료, 88개소 검사 준비
  - **학교**(초·중·고, 특수)와 **병설유치원** 등 **약 420개교**에서는 **긴급** 원격수업을 시행(7.2.~7.3.)하도록 하였다.
  - 대중교통 및 다중집합시설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조치(7.2.~7.15.)를 하였다.
- □ 광주광역시는 추가 확진자에 대한 심층 역학조사 및 접촉자에 대한 진단검사를 신속히 시행하는 한편,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사항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 2 광주광역시 확진자 증가에 따른 지원 방안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로부터 광주광역시 확진자 증가에 따른 지원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우선 호남권(광주·전남·전북) 병상 공동대응 체계를 활용하여 권역 내 감염병 전담병원의 가용병상을 우선 활용하여 병상을 확보한다.
    - 전라남도는 20병상, 전라북도는 21병상으로 총 41병상\*을 제공한다.
      - \* (전라남도) 강진의료원 14병상, 순천의료원 6병상 (전라북도) 전북대병원 10병상, 원광대병원 1병상, 군산의료원 10병상
    - 경증환자 치료를 위해 **중부권·국제1 생활치료센터**(천안 우정공무원 교육원) 이용을 통해 **병상 부족을 해소**할 계획이다.
  - 의료인력, 역학조사 인력 등을 지원하여 현장에서의 인력 부담을 완화한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즉각대응팀 현장 파견\*을 통해 역학조사 및 한자 관리를 시행하는 한편, 필요할 경우 전라남·북도가 역학 조사관을 추가 지원할 예정이며,
      - \* 광주 1팀 9명 파견(방역관 1명, 조사관 5명, 행정지원 3명, 광륵사 및 병원 확진자 관련 역학조사, 6.29.~)
    - 광주광역시가 의사, 간호사 등 추가 인력 소요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 제출하면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 또한 광주사회서비스원을 통해 지역사회 자원의 연계·활용을 지원한다.
      - \* 중앙지원단 3명, 대구사회서비스원 1명 파견(7.3.~) 및 긴급돌봄 예산 지원(1억 원)











- 진단과 치료를 위한 물품 수요 증가에 따라, **감염병 전담병원**에서 요청한 **마스크 3,000개**, **보호복 500개**, **페이스쉴드 500개** 등 **개인보호구를 지원**(7.3.)할 예정이며, 향후 물품 추가 지원 요청 시 **즉시 지원할 예정**이다.
- 광주광역시에서의 **사회적 거리 두기에 협조**하되, **필요한 행사**는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한다.
  -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국·공립 다중이용시설\*의 운영 중단을 각부처에 협조 요청(7.2.)하였으며,
    - \* 국립광주박물관, 국립광주과학관 등 각 부처 및 소속·산하기관의 운영시설
  - 공무원 9급 공채시험(7.11.)은 예정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앞으로도 **호남권 3개 시·도와 협력**하여 긴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 3 해외유입 상황 평가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시로 운영하던 국가별 코로나19 위험도 평가체계를 정례화하기로 하였다.
  - 정례 평가를 통해 **국가별 동향을 분석**하고, **확진자가 증가하는 국가**로부터 **환자 유입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결정할 예정이다.
  - 그간 **정부**는 확진자가 증가하는 국가로부터 환자 유입을 최소화 하기 위해 비자 제한, 항공편 감편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한 바 있는데 이를 정례화 한 것이다.
  - **해외유입 상황평가**에는 중앙방역대책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외교부, 법무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며,
    -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해외 위험도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매주 관계 부처에 공유하여, 정기적으로 상황평가 및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 4 생활 속 거리 두기 세부지침 추가 개정

- □ 지난 5월 27일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위한 41개 시설별 세부지침을 마련한 이후, 국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영역에 대한 세부지침 추가 및 개정한다.
  - 기숙사, 학술행사 등 생활영역 및 다중이용시설 11개<sup>\*</sup>에 대한 세부지침을 추가한다.
    - \* 기념식, 연수시설, 학술행사, 기숙사, 전시행사, 물류센터, 하천·계곡, 수상레저, 지역축제, 수영장, 고시원
  - 이 중 연수시설, 학술행사, 기숙사 등 5개 분야는 지침을 새롭게 마련하여 추가한 것이며, 물류센터, 수상레저 등 6개 방역지침은 각 부처에서 이미 시행한 것을 전체 지침에 포함하는 것이다.

구분	지침 분야	주요 내용		
기 존	. <b>그 그 .</b> 지 <b>역축제</b> (행안부, 문체부)	참여 시 개인 방역수칙 철저, 현장 참여 최소화, 온라인 개최 병행, 시식 및 홍보부스 운영 중단하거나 최소화 등		
	<b>하천·계곡</b> (행안부)	2m(최소 1m) 거리 두기 감안 텐트·돗자리 설치, 공용시설·다중이용시설 사용 인원 관리 및 이용 시간 최소화 등		
	<b>수상레저</b> (해경)	가족 단위 소규모 방문, 사전 예약제·시간대별 운영 등으로 이용자 분산, 증상 여부 확인 등		
행	<b>수영장</b> (문체부)	예약제·이용 시간제, 강습 종료 시간 조정 등으로 분산 유도, 체육지도자 무입수 지도, 어린이 통학버스 내 개인위생 준수 등		
(6)	<b>물류센터</b> (국토부)	택배 차량 운행 전·후 소독, 일용직 및 방문자 명부작성, 작업장 환기 등 물류센터 특수성 반영		
	<b>고시원</b> (다부처)	이용자 외 방문 자제, 명부관리, 공용공간 음식섭취, 대화 등 자제, 개인물품 사용, 공용공간 매일 1회 이상 소독 등		
시 행 예 정 (5)	<b>기념식</b> (다부처)	온라인 참여, 최소 거리 두기, 입장권 사전 예매 안내, 입장 정원 제한, 단체식사제공 자제 등 주의사항 규정		
	<b>연수시설</b> (다부처)	온라인 연수 활용, 소규모 단위 분반 교육, 연수 인원 관리, 참여 프로그램(레크레이션) 자제 등		
	<b>학술행사</b> (다부처)	온라인·오프라인 병행, 장소 규모 감안 인원 제한, 단체식사 제공 자제(필요 시 개인도시락), 후원사 홍보 부스 운영 자제 등		
	<b>기숙사</b> (다부처)	통학 가능 시 이용 자제, 1일 1실 배정, 매일 증상 여부 확인, 외부인 출입통제 등 감염경로 최소화, 개인·집단 예방수칙 마련		
	<b>전시행사</b> (산업부)	전시장이 밀집되지 않도록 입장정원 제한하기, 이용자가 2m(최소 1m) 거리 두기, 현금보다 전자 결제방식 이용, 외국 업체 초청 등 자제 등		











○ 또한 음식점, 종교시설, 목욕장업 등 8개 시설에 대해서는 감염 확산을 예방하고 현장에 맞도록 지침 보완도 함께 추진한다.

분야	보완 및 개정 내용			
대중교통	■ 대중교통 내에서 통화할 때도 마스크 착용 ■ 대중교통 내에서 음식물 섭취 자제			
음식점	■식사 전·후 대화 시 마스크 착용 ■식당 내 이동 시 마스크 착용 ■공용 집기류 사용 시 손 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구내식당은 시간을 나눠 분산 이용 ■수저관리(개별포장 수저 제공 등 위생적 관리)			
종교시설	■합창 등 노래 및 큰 소리로 말하는 행동 하지 않기 ■각종 모임 및 행사 자제 ■종교시설 내에서 음식 섭취 하지 않기 ■종교행사 후 시설소독 및 환기(소독 관리대장 작성)			
유원시설	■놀이공원, 워터파크 등 종합·일반·기타 유원시설 ■입장 인원 관리, 공용시설 이용 시간 최소화 등			
해수욕장	■가족 단위·소규모로 방문 ■가급적 개인 숙소·시설 등 이용 ■탈의실, 샤워실 사용 인원 제한 등			
<b>목욕장업</b> (목욕탕, 찜질방)	■지정된 장소 외 음식물 섭취 제한 ■사업장 내 노래방기기 이용 금지 ■탈의실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 ■영업 전·후 시설 소독			
공연장	■공연자와 관람객 간 악수, 포옹, 기념촬영 등 신체접촉 금지 ■소독 관리대장 작성			
노래연습장	■노래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 착용 ■손님 이용한 룸은 소독 실시 후 재사용			











### 5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생활 속 거리 두기) 이행 상황 및 점검 현황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로부터 각 **지방자치** 단체의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생활 속 거리 두기) 이행 상황**을 보고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7월 2일(목)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노래연습장 3,033개소, ▲실내 체육시설 1,047개소 등 40개 분야 총 23,655개소를 점검하였다.
    - 점검 결과 마스크 미착용, 환기 미흡 등 203건에 대해 현장지도하였다.
    - 울산에서는 노래연습장 246개소, 실내체육시설 7개소를 집중 점검하여 마스크 미착용, 1~2m 거리 두기 미흡 등 36건에 대해 행정지도하였으며,
    - 충북에서는 PC방 123개소, 노래연습장 122개소를 집중 점검하여, 출입자 명부 미작성, 뚜껑 없는 쓰레기통 비치 등 44건을 행정 지도하였다.
  - 클럽·감성주점 등 유홍시설 3,211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식품 의약품안전처 등이 합동(127개반, 720명)하여 심야 시간(22시~02시)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 점검 결과 371개소가 영업 중지임을 확인하였고, 영업 중인 2,840개소에 대해서는 전자출입명부 설치, 방역수칙 준수 안내 등을 지도하였다.











### 6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을 보고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7월 2일(목)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34,479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8,705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5,774명이다.
    -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281명이 증가하였다.
  - 어제(7.2)는 카페·공관 방문 등으로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이탈한** 2명을 확인하여 고발 조치하였다.
  - 아울러 해외입국자나 거처가 없는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65개소 2,871실의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1,077명이 입소하여 격리 중이다.
    - \* (7월 2일) 입소 240명, 퇴소 206명, 의료진 등 근무 인력 352명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명수배자**가 **자가격리 대상**인 경우(5월 이후 5건)에 대한 **자가격리 관리방안**을 마련하였다.
  - 이에 따라 진단검사 결과 및 구속 여부에 따라 관리방안을 구분<sup>\*</sup> 하여 설정하고, 자가격리 중인 지명수배자에 대한 관계기관 간의 정보 공유 및 모니터링 시 긴밀한 협업체계가 이뤄지도록 하였다.
    - \* (검사결과 양성) 병원 입원 조치하되, 구속 필요시 경찰 감시인력 배치 / (검사결과 음성) 구속 필요시 일반적 구속 절차를 진행하고, 구속 불요시 검찰과 협의하여 체포영장 반환 또는 석방, 자가격리 후 지자체·경찰 협력 강화











### < 붙임 > 감염병 보도준칙

- < 별첨 > 생활 속 거리 두기 세부지침(3판)
- < 홍보자료 별첨 > 1. 코로나19 일반국민 10대 수칙
  - 2. 코로나19 유증상자 10대 수칙
  - 3.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
  - 4.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 5. <일반 국민>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 6. <격리자>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 7. <확진자>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 8. 마스크 착용법
  - 9. 대한민국 입국자를 위한 격리 주의사항 안내











## 붙임

## 감염병 보도준칙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 협회에서 제정한 「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입니다.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 감염병 보도준칙

#### ■ 전문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 ■ 기본 원칙

####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 나.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 다. 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 2. 신종 감염병의 보도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 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본부를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 4. 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 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 (예: 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 6. 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 7. 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 '치사율 40%'…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 '코리아 포비아' 악몽"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 '살인진드기' 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 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물리면 사망위험 커"
- "전파력 메르스 '1000배'…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 ■ 권고 사항

-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 ■ 별첨

###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 2(감염병위험 시 정보공개)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 시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된 사항 중 사실과 다르거나 의견이 있는 당사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7.6.]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① 제27조의3(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감염병에 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예보 또는 경보가 발령된 후에는 법 제34조의2에 따라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을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거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 7.]

####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기본 항목

- 질병정보 (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 (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확진 환자 관련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 ■ 부 칙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단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





